



보도 일시	2022. 8. 3.(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8. 2.(화)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흔진 (044-201-7270)
		담당자	사무관 박동명 (044-201-7279)

환경영향평가업 관계자 및 전문가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8.9), 사전의견 수렴(8.4~8.8)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 (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 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거짓·부실 판단기준 합리화)**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하여 평가업자를 행정 처분하지 않도록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측정대행업체 측정부실로 인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합리화)**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환경영향평가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추진 중('22.7~'23.7, 한국환경법학회)

-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포럼)'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ی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계획.
2.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건의사항(서식).
3. 최근 법령·고시 개정 주요 내용.
4. 제도개선 추진 포럼 및 연구 주요 내용. 끝.

□ **개 요**

- (일시/장소) '22.8.9(화) 14:00~16:00, 서울역 대회의실
- (참석자) 평가업체(1종·2종), 유관기관(협회·학회·평가사회)
- (목 적) 환경영향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논의 및 평가업체 건의 사항 의견수렴 등

□ **주요 논의사항**

- (거짓·부실 판단기준 합리화) 단순 실수로 인한 평가서 작성오류를 부실 작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부실작성 기준 개선*(시행규칙 별표2)
 - * (현행) 고의 또는 과실 → (개정 방향)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측정대행업을 평가법 관리대상으로 확대* 하여 측정부실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 사전예방(시행규칙 별표5)
 - * (현행) 1종·2종 대행업 → (개정 방향) 1종·2종·측정대행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 평가대행 입찰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논의*(시행규칙 별표5)
 - * (현행) 엔지니어링 사업자 → (개정 방향)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 (감점기준 합리화)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평가업체 사업수행능력 심사시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 차별 적용
 - * 현행 기준에서는 평가서 부실작성의 경우 일률적으로 감점 2점 부여
- (기타 건의사항) 평가제도 개선 사전의견 수렴을 절차를 통해 제출된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 **향후 계획**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22.8.9)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연구용역 수행 및 제도개선('22.8~)

업체명칭		평가업 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전화번호)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소재지			
건의사항			
<input type="checkbox"/> 현행제도의 문제점 ○ -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① 개선방안 ○ - ② 기대효과 ○ -			
<input type="checkbox"/> 기타 건의사항 ○ -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정책변화 반영)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새롭게 반영하여 이상기후(폭염, 폭우, 가뭄 등)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규정
- (평가준비서 구체화) 평가준비서에 환경보전목표를 수립토록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설정 및 시나리오 설정·분석방법 구체화
- (평가서 구체화) 현황조사 시 신규 국가 공간정보의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토록 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재대행 계약) 평가서(자연생태환경분야) 재대행시 업무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대행업체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제출의무 신설
- (평가업자 처분) 평가서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행정 처분 기준 신설(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취소)
- (평가기술자 처분) 평가서 거짓 작성시 평가기술자 인정정지를 9개월에서 인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가점부여) 평가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사를 고용한 평가업자에 대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0.5점)을 부여
- (투자실적 기준) 대기업에 유리한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준을 완화(3% 이상 2점→ 1.5% 이상 2점)하여 중소기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
- (신기술 활용실적)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준을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반영한 경우에서 설계에 반영된 경우까지 범위 확대

□ **제도개선 추진 포럼**

- (목적)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사항 발굴·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기간/운영기관) '22.7. ~ '22.11. (6회) / KEI
- (참석대상) 국회, 환경부, 검토기관, 전문가, 사업자, 평가대행자, 시민단체, 협의기관, 승인기관, 이해관계자 등 30명 내외

<세부일정>

일시	주제
7월	1차 포럼(EIASS 운영 개선 방안)
8월	2차 포럼(평가제도 개선방안 논의)
9월	3차 포럼(거짓·부실 사례분석 및 벌칙 조항 개선방안)
10월	4차 포럼(평가제도 개선방안 논의)
11월	5차 포럼(대행비 산정 기준 개선방안)
11월	추가 논의 의제 자문 및 원고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 도출

□ **환경영향평가 효율화·내실화 개선방안 연구**

- 연구개요
 - (연구명)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 (기간/연구기관) '21.7 ~ '22.3월(9개월)/ KEI
- 주요 내용
 -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조사·분석
 - 국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동향을 조사·분석
 - 환경영향평가등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및 법령 개선 방향 마련
 - ①전략평가 스크리닝(정책계획) 도입 방안, ②주민등의 의견수렴 절차·방법 등에 관한 개선방안, ③변경협의·재협의 대상 범위·절차 및 관리방안 ④평가 분야 및 항목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⑤형평성·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업 등록기준 ⑥거짓·부실 판단기준 고도화 ⑦환경갈등 조정·관리, 평가서등의 작성 지원 및 컨설팅 기능 강화 방안 ⑧디지털 EIA의 적용 등 평가의 중·장기 개선